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25.10.26, 본회의 의결) 후속조치

-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위임·위탁된 기관별로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5대강 치수시설(유역·지방 환경청장), 5대강 친수시설과 그 외 국가하천(시·도지사), 아라천과 16개 다목적보(한국수자원공사)

- 매년 시행하는 하천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담당기관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필요

나.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정기보수가 홍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보수의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다. 동 규칙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하천에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보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위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으로 다양하게 위임·위탁하고 있으므로 하천 유지·보수 시행 주체를 당초 ‘하천관리청(위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포함)’에서 ‘유지·보수 주체’로 개정하여 하천법과 규칙이 일관성 있도록 개정

- 나. (순찰) 하천 유지·보수 주체가 하천공사 구간 내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 (안전점검)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중복되는 경우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라. (보수)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을 보수하는 정기보수에 대해 보수방안 마련하여 다음연도 홍수기 전까지 시행하도록 개정
- 마.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이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규칙에서 삭제
- 바. (지방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동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직관적으로 제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제13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계획

부처협의 → 사전규제심사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안
확정 → 관보게재 → 공포 → 국회제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법」 제13조”을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6항,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장
2.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법 제92조제3항6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장
4.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을 “유지·보수 주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의 보고는 시·도 조례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식 및 일정 등을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같은 조(중전의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중전의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은”을 각각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조)제2항제4호를 “하천공사(하천점용공사 포함)가 하천공사 구간 내의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하천관리청은”을 각각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지·보수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과 타 법령에 따른 점검 범위, 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점검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점검의 대상, 범위 및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결과 제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은”을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제2항을 “유지·보수 주체는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해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홍수기 전까지 정

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기 전까지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과 “제5조”를 각각 “유지·보수 주체는 제5조제1항”과 “제6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은”을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

③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도지사가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은”을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은”을 “유지·보수 주체는”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유지·보수 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3조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의 보고는 시·도 조례

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식 및 일정 등을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6항,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장 2.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법 제92조제3항6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임·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규칙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업무가 제외되어 있어 당초 “하천관리청”을 「하천법」에 따라 위임·위탁된 기관별로 “유지·보수 주체”로 정의	이후 “하천관리청”을 “유지·보수 주체”로 개정

현행	개정안	사유
제2조 (생략)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장 4.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유지·보수 주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의 보고는 시·도 조례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식 및 일정 등을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2026. . .>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하천관리청인 해당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사유
② (생략) <u>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u> ① <u>하천관리청은</u>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u>하천관리청은</u>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u>하천공사 현황</u>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② (현행과 같음) <u>제5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u> ① <u>유지·보수 주체는</u>----- ----- ----- ----- ② <u>유지·보수 주체는</u> ----- ----- ----- 1. ----- 2. ----- 3. ----- ----- 4. <u>하천공사(하천점용공사 포함)가 하천공사 구간 내의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u> 5. ----- -----	유지·보수 주체가 하천공사 구간 내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현행	개정안	사유
③ <u>하천관리청은</u> (이하생략) <u>제5조(안전점검)</u> ① <u>하천관리청은</u> (이하 생략) ② <u>하천관리청은</u> (이하생략) ③ (신 설) ④ (신 설)	③ <u>유지·보수 주체는</u> (이하 현행과 같음) <u>제6조(안전점검)</u> ① <u>유지·보수 주체는</u> (이하 현행과 같음) ② <u>유지·보수 주체는</u> (이하 현행과 같음) ③ <u>유지·보수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범위, 시기 및 항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점검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점검의 대상, 범위 및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결과 제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u>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타 점검과 범위, 시기 및 항목이 중복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병행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사유
제6조(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이하 생략)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	제7조(보수) ① 유지·보수 주체는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유지·보수 주체는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해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홍수기 전까지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기 전까지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주체는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재해대책) ① 유지·보수 주체는	효율적으로 하천을 정기보수 할 수 있도록 시기 및 방법 개정

현행	개정안	사유
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② (생략) ③ (신설)	----- ----- ----- ----- -----<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2026.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도지사가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소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8조(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이하 생략) ② (생략)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제9조(하천보수원) ① 유지·보수 주체는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사유
<u>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u> <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② (생략) <u>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u>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u>	<u>제11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유지·보수 주체는 (이하 현행과 같음)</u> <u>제12조(보고) 유지·보수 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부터</u>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의 보고를

현행	개정안	사유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3조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결과의 보고는 시·도 조례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식 및 일정 등을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23., 2021.12.28., 2025.10.1., 2026. . .>	하천관리청인 해당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연 락 처	(044) 201 - 7535